

【 17 】 2000년 저소득세입자 체무보증의 건

제출연월일 : 2000. 4. 15

제 출 자 : 양주군수

□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세입자의 전세자금 응자 지원에 따른 군 체무보증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가. 응자배정액 : 200백만원(경기도로부터 배정)

나. 응자 금액 : 세대당 10백만원

다. 목 적 : 저소득 세입자 응자금 지원

다. 대출 기관 : 한국주택은행

라. 응자 방식

· 주택은행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운용을 위한 특별계정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세입자에 응자

대손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

2000년 저소득세입자 채무보증의 건

■ 안건요지

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
융자 지원함으로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전세
융자금 지원사업의 군 채무보증을 위한 의회 의결 안건임

■ 제출배경

- '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한 영세민 전
세자금 융자제도를 인구 5만 이상의 시 및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
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
-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지원계획에 의거 200,000천원이 우리군으로
배정되어 채무보증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음

■ 관련법령 조문발췌 요약

- 지방자치법제115조(지방채무 및 채권관리)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·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
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
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수 있다

○ 지방재정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

-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, 채권자명, 채무자명, 상환 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-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(지방자치단체가 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·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사항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·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(참고 - 1)

■ 지원방향

○ 선정대상

양주군에서 2년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2,000만원이하 전세입자 및 응자금을 지원받아 2,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세입자

○ 응자금액 : 세대당 10,000천원 이내

○ 상환방법 : 2년후 정기상환(년 3%)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

○ 응자관리 : 주택은행에서 응자 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

(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)

○ 응자계약의 체결 방법

- 계약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

- 보증인 :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
발행한 주택은행 신용보증서

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: 우리군이 총체적 보증

■ 미납자에 대한 조치

○ 응자지원대상자의 보증인으로부터 청구

○ 기타 전세계약 응자액(응자원금, 이자) 상환의 장기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

- 기간은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환을 불이행한 경우로 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회수가능 여부를 관할 읍·면과 주택은행이 채무관계자를 방문 확인한 후 협의 결정하되 서면으로 작성토록 함

-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를 1개월 이상 유보 토록 조치

-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을 보상한 경우에도 주택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 행사등에 적극 협조토록 함

(참고 - 2)

■ 대상자 선정방법

○ 선정기준(상위 점수순으로 선정)

적 용 대 상		점 수
계		100점
해당읍 · 면 거주기간	2년이상 10점에 1년 초과시 1년마다 1점 가산(20점 한도)	20점
가 족 수	3인까지 6점에 1인 추가시마다 2점가산 (10점 한도)	10점
주소득자 월평균소득	10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	20점 16점 12점
세 대 주 연 령	60세이상 50세이상 60세 미만 40세이상 50세 미만 30세이상 40세 미만	20점 16점 13점 10점
가구원 구성형태	장애인(1~3급 수첩교부자) 장애인(4~6급 수첩교부자) 모자가정 기 타	10점 8점 6점 2점
노부모 동거여부	노부모(70세이상) 동거시 '노부모(65세이상 70세미만) 노부모(60세이상 65세미만) 기 타 ※ 편부모 포함	15점 12점 9점 5점
읍 · 면장 의견	읍 · 면장의 응자 필요성 판단 의견 반영	5점

○ 선정 제외자

- 총점 60점 미만자
- 양주군에 2년미만 거주자
-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가진자
-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, 주택등 부동산
(점포, 사무실, 토지포함) 소유자 또는 입주예정자
- 전세보증금 응자를 받아 상환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(주민세, 면허세는 제외)
-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1년 납입금액이 100,000 미만인 경우